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증원, 위원후보추천위 설치 및 군인권보호관 변경〉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33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권위원 증원 및 자격요건 변경	3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9
3.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17
4. 부 칙	23
※ 참고자료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이해민 · 강경숙 · 서왕진 · 정춘생 · 최혁진
황운하 · 김선민 · 차규근 · 박상혁 · 강준현 · 백선희
한창민 · 윤종오 · 서미화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 의안번호 : 1243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
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권위원 증원 및 자격요건 변경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함)의 정원을 11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에서 15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9명)으로 증원하고, ② 인권위원 자격요건 중 대학·연구기관 관련 경력 및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경력에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11명</u> 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5명</u> ----- <u>15명</u>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 (상임위원 <u>2명</u> 을 포함한다)	1. ----- <u>7명</u> ----- <u>4명</u>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4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5명</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③ ----- ----- -----

현 행	개 정 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u>사람</u>	1. ----- ----- ----- <u>사람</u> <u>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u> <u>경력이 있는 사람</u>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u>사람</u>	2. ----- ----- <u>사람</u> <u>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u> <u>경력이 있는</u> <u>사람</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가. 인권위원 증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장관급) 1명 및 상임위원(차관급) 3명과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상임위원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②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③ 비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²⁾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인 정책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인권 관련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증가하

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참고로, 인권위원은 6개 소위원회 중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임(2025. 8. 31. 기준).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4명)	분 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소라미	검 · 경 · 국정원, 입법부, 사법부
침해구제제2위원회	김용원 · 이한별 · 원민경 · 김용직	구금 · 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아동권리위원회	이숙진 · 한석훈 · 원민경 · 소라미	만19세미만아동(장애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원민경 · 김용직 · 강정혜	성희롱 · 차별행위 (아동 · 군 · 장애차별 제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이한별 · 김용직 · 강정혜	장애차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이한별 · 강정혜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구 분	내 용
정책권고	◦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 · 연구 및 개선 권고 · 의견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 의견표명
조사 · 구제	◦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포함), 공직유관단체, 구금 ·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 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조사 · 구제
교육 · 홍보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협력	◦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인권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되, 그 중 국회 선출 인권위원을 4명(상임위원 2명)에서 7명(상임위원 4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4명(상임위원 1명)에서 5명(상임위원 1명)으로 증원함으로써,⁴⁾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 인권위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선출·지명 기관별 인권위원 몫이 변경되어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지명 기관별로 차지하는 인권위원 비율이 바뀌게 되는데, 현행과 비교하였을 때 개정안의 선출·지명 기관별 비율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2] 현행법 및 개정안 인권위원 구성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11명 (국회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15명 (국회 7명, 대통령 5명, 대법원장 3명)
상임위원회 ⁵⁾	4명 (국회 2명, 대통령 2명)	6명 (국회 4명, 대통령 2명)

4) 상임·비상임으로 구분 시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증원됨.

5) 위원장은 대통령 몫에 추가함.

둘째,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차관급 보수가 지급되고 상임위원 1명당 4명의 인력이 지원되며 차량·사무공간 등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⁶⁾ 상임위원 2명 증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조직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나. 인권위원 자격요건 변경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3항⁷⁾은 ①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 ②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 ③ 인권 관련 활동 10년 이상 종사, ④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은 종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한 것

6)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임위원 1명당 보수(연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154,222,920 원이고, 상임위원실에 4명(일반직공무원 3명, 임기제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 G80이 제공되고 있음.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으로, 이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⁸⁾

그런데, 실질적인 인권 관련 경력과 무관하게 교수 경력 또는 법조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⁹⁾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인권옹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두루 갖추거나 소수자 계층의 대표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요건과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요건에 실질적인 인권 관련 활동 종사 경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8)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일부개정·시행) 주요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제5조제3항).

9) 법조인 중에서도 인권위원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가 있을 수 있으나, 법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조 경력이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조 출신 인권위원이 다수 임명되어 온 경향이 있었고, 이들이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79).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신설).

[표-3]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기능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구성시기	인권위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위원 수	10명(위원장 1명 포함, 호선)
위원	○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 기관이 추천하는 6명 (국회 선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3명, 그 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추천 3명)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소집요건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추천 후보자	3배수 이상
후보자 공개	추천 명단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존속기한	후보자 추천 시 해산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u>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 ----- ----- -----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

현행	개정안
	<u>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u> <u>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u> <u>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u> <u>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⑧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u> <u>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u>

현 행	개 정 안
	<u>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¹⁰⁾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¹¹⁾

참고로,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아일랜드 등의 국가 인권기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2 참조).

또한,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7명 또는 9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으며, 2025년 9월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총 9회 운영하였음.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3~5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지명해왔음.¹²⁾

10)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1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12)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회의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규나 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5]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최영애 (위원장)	2018. 6. 15.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송두환 (위원장)	2021. 6. 13.	9	대통령 추천 4,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 4	4명
안창호 (위원장)	2024. 7. 4.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5명
박찬운 (상임위원)	2019. 10. 18.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용원 (상임위원)	2022. 12.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문순희 (비상임위원)	2019. 6. 13.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서미화 (비상임위원)	2020. 2. 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종민 (비상임위원)	2022. 9.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이한별 (비상임위원)	2023. 5. 26.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시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3 참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기관과 위임법령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단일 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선출·지명 기관이 일부 관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¹³⁾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4명)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 선출 인권위원(4명)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3명)까지¹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따라 국회 및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국회 및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단순하게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을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구분하여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법 규정¹⁵⁾과 상충될 수도 있음.

13)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6명을 선출·지명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선출 7명,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3명임.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법령의 종류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국회규칙·대통령령·대법원규칙으로 구분 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②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및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표-6]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및 위임법령 현황

후보추천위	설치기관	위임법령 형식	비 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	대법원규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⁶⁾

16)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1	진성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73	서미화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77	고민정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3.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u>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u>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 ---- <u>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¹⁷⁾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음.¹⁸⁾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면서,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18) 2016. 6.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15. 12. 29. 제정)되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2022. 1. 4. 일부개정)되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직·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회, 긴급구제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8]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및 권한

구 분		주요내용
조 직	군인권보호관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 ○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 침해예방 등 수행하는 소위원회
	지원조직	○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설치 ¹⁹⁾
권 한	진정사건 조사	○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요구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 조치)	○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참고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2022. 7. 1. 이후 2024. 12. 31.까지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 사망사건 수사 입회 현황, 긴급구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3회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51건의 사망사건 통보에 대하여 143건 입회하였으며 4건의 긴급구제를 처리하였음.

[표-9]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2022. 7. 1. ~ 2024. 12. 31.)²⁰⁾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1	22-방문-0000400	'22. 8. 23.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권고	종결

19)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3개 과단위 조직으로 구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20)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실시되었는데, 2020년에 1회(사건명: 2020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2021년에 1회(사건명: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되었음.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2	23-방문-0000100	'23. 2. 28.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종결
3	23-방문-0000600	'23. 5. 30.	해군 격오지(함정) 방문조사	종결
4	23-방문-0000900	'23. 8. 29.	2023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종결
5	23-방문-0001000	'23. 9. 26.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종결
6	23-방문-0001100	'23. 11. 28.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공군, 육군)	종결
7	24-방문-0000400	'24. 2. 29.	육군사관학교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8	24-방문-0000500	'24. 3. 29.	해병대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9	24-방문-0000700	'24. 4. 30.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GOP)	종결
10	24-방문-0000800	'24. 6. 25.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종결
11	24-방문-0001000	'24. 7. 23.	공군 격오지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12	24-방문-0001100	'24. 7. 23.	2024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종결
13	24-방문-0001300	'24. 11. 27.	제17전투비행단 전대장 성폭력 등 방문조사	종결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표-10] 사망사건 통보 및 입회 현황(2022. 7. 1. ~ 2024. 12. 31.)

(단위: 건)

구 분	사망사건 통보					위원회 대응			
	자해 사망	병사	사고사	기타	소계	입회	기초 조사	소계	진정 접수
'22.7.1.~12.31.	35	26	19	-	80	28	52	80	10 (직권 1)
'23.1.1.~12.31.	68	41	16	1	126	53	73	126	9 (직권 1)
'24.1.1.~12.31.	77	46	21	1	145	62	83	145	7
계	180	113	56	2	351	143	208	351	2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표-11] 긴급구제 처리 현황(2022. 7. 1. ~ 2024. 12. 31.)²¹⁾

연도	사건번호	제목	종결일	결과
2022	22-긴급-0001100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	'22. 8. 16.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3	23-긴급-0002000	군인 사망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23. 8.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0900	군 지휘관의 부당 처우 및 인권침해 등	'25. 1. 9.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1700	예비군 동원 보류자의 예비역 진급대상 제외 부당	'24. 8. 5.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어,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 문제를 정부측 입장에서 바라볼 개연성이 높아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²⁾

이에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권보호관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보다 독립적·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권보호관의 지위 및 임명 문제는 제21대국회에서 군인권

21) 긴급구제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처리되었는데, 2020년에 1건(군 복무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1년에 1건(군인, 부당 전출명령 및 강제이주 상황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하지 않음) 처리되었음.

22) 이승택,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법학연구 제24권제1호(2024. 3.), p.114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안’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하는 안’을 병합 심사하였는데,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선출하게 되면 결국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²³⁾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었음.²⁴⁾

[표-12] 제21대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위·임명 관련 개정안 내용

조승래의원안	배진교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위원 2명 증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 (위원 2명 증원)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할지 여부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당시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선출 상임위원 임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

23)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록(2021. 11. 29.), p.4
발언 취지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장을 정리하였음.

24) 참고로, 제19대국회에서는 군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과제를 결정하였음(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5, p.42).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²⁵⁾

25)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691	박지원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4. 부 칙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표-13]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인권위원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하여, 인권위원이 증원되고 그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개정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 규칙 마련 등 하위 법령의 정비도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필요한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 1 인권위원 현황(2025. 8. 31. 기준)

직 위 (직 급)	성 명	주요경력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장(男) (장관급)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법인(유한) 화우 고문변호사	24. 9. 6. ~27. 9. 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男) (차관급)	김용원	·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 및 고등검찰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	23. 2. 6. ~26. 2. 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이숙진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 여성가족부 차관	25. 5. 20. ~28. 5. 19.	국회 선출
상임위원 (차관급)	공 석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21. 10. 15. ~24. 10. 14.	국회 선출
위원 (비상임위원)	공 석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한별	·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23. 6. 30. ~26. 6. 29.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원민경 (25. 9. 2. 면직)	·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 前 법무법인자하연 변호사	23. 7. 24. ~26. 7. 23.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용직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4. 3. 15. ~27. 3. 14.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강정혜	·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 ·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	24. 3. 15. ~27. 3. 14.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소라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 센터 부센터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4. 9. 13. ~27. 9. 12.	대법원장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참고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국내외 참고사례

□ 해외 인권기구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국가명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추천위원회 기능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선정패널’ 구성	위원선정패널에서 위원장급 3명, 위원급 8명 선정 후 명단 제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의회에서 정당 의석 비율에 맞추어 ‘추천위원회(Committee of the Assembly)’구성	추천위원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인권 위원으로 추천됨.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과 의회의 구성원이 구성하는 후보자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자선정위원회가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함.
아일랜드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	위원 공석 발생시 정부가 자문단 (the Service) 구성	자문단이 예비 후보자를 선정, 정부 허가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

□ 국내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10명)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1항)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9명)	법무부 (검찰청법 제34조의2제1항)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다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권고: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재승인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 및 이번 등급심사 기간 중 승인소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인권기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 참고 사항:

1.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그 중 2명은 상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그 중 1명은 상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인권위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은 3개의 선출·지명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일관되고 공식화된 단일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는 정당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히 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고위직에 대한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체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1.8을 참고한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예산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들을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국가가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예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균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한 경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국가인권기구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독립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정하
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
력을 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규정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
견해 2.7을 참조한다.

참고 4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22. 7. ~ 2024. 12.)

□ 2022년 7월 ~ 12월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2. 7. 1.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1	-
2차	2022. 7. 26.		28	6	22
3차	2022. 8. 23.		14	4	10
4차	2022. 9. 23.		42	2	40
5차	2022. 10. 20.		20	6	14
6차	2022. 11. 15.		22	4	18
7차	2022. 12. 20.		29	9	20
합계			156	32	124

□ 2023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3. 1. 3.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0	1
2차	2023. 1. 31.		25	6	19
3차	2023. 2. 28.		30	5	25
4차	2023. 4. 4.	김용원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56	11	45
5차	2023. 4. 28.		31	7	24
6차	2023. 5. 30.		27	7	20
7차	2023. 6. 28.		39	9	30
8차	2023. 7. 25.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34	7	27
9차	2023. 8. 9.		1	0	1
10차	2023. 8. 29.		26	10	16
11차	2023. 9. 26.		16	3	13
12차	2023. 10. 24.		22	5	17
13차	2023. 11. 28.		33	3	30
14차	2023. 12. 27.		19	5	14
합계			360	78	282

□ 2024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전	의결안전
1차	2024. 1. 30.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46	6	40
2차	2024. 2. 28.		31	3	28
3차	2024. 3. 29.		24	2	22
4차	2024. 4. 30.		23	8	15
5차	2024. 6. 4.		31	6	25
6차	2024. 6. 25.		39	7	32
7차	2024. 7. 23.		12	4	8
8차	2024. 9. 11.		49	10	39
9차	2024. 9. 24.		5	0	5
10차	2024. 10. 23.		32	5	27
11차	2024. 11. 27.		33	4	29
합계			325	55	27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